

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 접수

□ 사업개요

-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 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선정

*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**병역지정업체로 지정**되어야 함

□ 신청요건

-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

-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

-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

- 신청자격 : 「병역법」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

*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산학인」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2.6.10.(금) 10:00 ~ 2022.6.30.(목) 18:00

- 신청방법 : 산학인 홈페이지(smes.go.kr/sanhakin) 온라인 접수

* 기업회원 로그인 - 신청관리 - 산업기능요원 신청

- 문의처 : 1899-3001 (중진공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)

※ 상세한 내용은 「20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선정 및 2023년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」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 산학인 홈페이지(smes.go.kr/sanhakin) - 알림마당 - 사업공고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